

자조금제도 하반기부터 시행될 듯

– 자조금 규정한 「농발법」 국회 통과

본회가 80년대 초반부터 계속 요구해 온 자조금제 도가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3월 16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 농림수산위원회가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자조금의 적립지원」 등을 규정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농발법」 중 자조금 관련 조항은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내용은 「제13조(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특정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이 생산자단체를 조직하여 당해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대상이 되는 농수산물과 보조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본회와 축산관련 생산자단체는 별도 축산업자조금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시킬 예정이었으나, 「농발법」에 자조금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독자 입법을 보류하고 「농발법」에

자조금 규정을 삽입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농발법」 제13조에는 단순히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조금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국회가 생산자들의 주장을 최대한 수렴, 이 조항을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로 수정,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본회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축산물의 소비촉진사업 ▲조사연구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신제품개발사업 등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자조금제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대로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는 6~7월이 유력하다.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시행령을 보면 일단 자조금을 시행하는 품목은 ▲우유 ▲돼지 ▲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생산자 단체가 적립한 자조금의 5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회는 자조금제도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곧 농림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성농역에서 돼지고기 216톤 「꿀꺽」

– 2년간 5억 4천만원어치 절취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기어코 일어나고야 말았다.

축산물 도매시장으로서 소·돼지를 도축해 주고 있는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소재 우성농역 직원 2명이 지난 2년간 양돈농가들이 위탁한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돼지고기 216톤(식가 5억4천만원어치)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 양돈농가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우성농역 돈부작업반장 이현상씨(45세) 등 2명이 지난 88년 3월부터 금년 3월 초순까지 목살 등 돼지고기 216톤을 생산농가 몰래 빼돌려 5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이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동경찰서는 이들로부터 돼지고기를 넘겨받아 노점상과 포장마차 등에 팔아온 정육점 경호집(성동구 마장동 480번지) 주인 이경호씨(35세) 등 3명을 상습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도축중 돼지머리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대로 도축하지 않고 돼지 몸쪽으로 머리를 절단, 돼지 1두당 1~2근의 돼지고기를 머리에 붙이는 수법으로 돼지고기를 절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즉

도부들이 칼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육 1~2kg을 도둑질 당하느냐,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일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양돈농가들은 이번 사건이 터지기 훨씬 전인 수년전부터 이와 같은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말해왔고, 또 본지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도축장의 문제점을 지적, 이의 개선과 서울시의 지도·감독을 촉구해 왔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도매시장 법에 따라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서울시에도 그 책임이 크다 하겠다. 도축장에서 시험도축을 할때는 65~68%로 정상적인 지육률이 나오나, 평소 출하할 때는 지육율이 62~63%로 뚝 떨어진다는 것이 양돈농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부정에는 도부들의 열약한 근무조건과싼 임금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도축장을 잘 아는 사람들의 지적이 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도축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성농역 또한 도부들의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다. ■